

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의 자의적 판단기준을 투명하고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원묘지 사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묘지사용 허가의 취소요건중 행정의 자의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“법령,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”를 “분묘 및 부대시설변경이 관계법령에 저촉될 때”로 규정
(안 제4조제5호)
- 나. 비석의 설치시 사망자의 성명은 의무적으로 표기하되 가족의 성명을 자율에 의하도록 함. (안 제7조제1항)

□ 검토의견

-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묘지사용 허가의 취소요건중 “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”를 “관계법령에 저촉될 때”로 규정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,
- 비석의 설치시 의무적 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 한 것으로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